

강서유통단지 고객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23-136
----------	----------

제출연월일: 2023년 11월

제 출 자: 강 서 구 청 장

1. 제안이유

- 강서유통단지 내 신규로 건립한 고객지원센터의 운영 사무를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양질의 고객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부칙 제3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 현황

○ 시설 현황

시설명	소재지	시설 규모		개관 예정월
		연면적	층수	
강서유통단지 고객지원센터	국회대로7길 114 (화곡동 855-11)	299.93m ² (90.6평)	지하1층~지상5층	'23년 12월

○ 위탁운영체 현황

대상기관명(대표자)	강서유통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이종만)
설립일자 및 연혁	2003. 8. 27. 조합 설립
주요사업	강서유통단지 활성화
인력현황	비정규직 1명
재정부담능력	'22년 수입 41,995천원(조합원 월 회비 등)
전문성 확보 및 사무처리 실적 등	2014년도~2022년도 중소기업중앙회 육성지원사업 진행완료 2022년도 강서구청 지방보조금사업 완료 2023년 강서구청 지방보조금사업 진행중

나. 필요성

- 민간위탁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의 고비용·저효율을 개선하거나,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과 필요성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바,
- 강서유통단지 고객지원센터는 방문 고객의 서비스 요구에 신속하게 응대하고 책임경영과 시설물 안전관리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강서유통단지 내 상인 조직에 위탁하여 직접 운영하게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음

다. 주요 위탁내용

- 추진근거 : [붙임 1 참조]
- 위탁기간 : 5년
-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 위탁사무 내용 : 강서유통단지 고객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 등
- 수탁자 선정 : ‘강서유통단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적정성 심사위원회’ 심의 의결 (2023. 8. 8.) [붙임 2 참조]

라. 추진일정

- 2023. 08월 :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 개최
- 2023. 11월 : 민간위탁 계약 동의안 구의회 제출 및 방침서 수립
- 2023. 12월 : 위탁계약 체결 및 공증

3. 참고자료

가. 추진근거 관계법령(붙임 1)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 2
-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9조
-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4조 및 제13조
-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20조

나.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붙임 2)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3)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 2**제17조의2(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수익허가 조건 또는 대부조건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횟수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9조**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 ①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사무는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등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구청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4조

제4조(시장의 주요시설과 편의시설의 관리)

- ② 구청장은 구의 공유재산인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상인조직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상인조직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3조

제13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히는 한 차례에 한하며, 조건은 구청장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조건은 구청장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5.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20조

제20조(수익발생 시설 위탁운영)

- ① 구청장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된 수익발생 시설(공동판매장, 고객지원센터, 공동물류창고, 태양광발전 등)의 운영관리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을 무상으로 위탁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입과 지출추계 등을 통해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곳은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다.

심 의 의 결 서

안 건

○ '강서유통단지 고객지원센터 관리 위탁' 신규 민간위탁 적정성 및 수의계약 적정성 심의

일 시: 2023. 8. 8.(화) 10:00

심의결과: 심의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함.

연번	위탁사무명	민간위탁 적정성	수의계약 적정성
1	강서유통단지 고객지원센터 관리 위탁	적정	적정.

2023. 8. 8.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

위원장	조희정 (서명)
위원	은선경 (서명)
위원	한동기 (서명)
위원	박영미 (서명)
위원	강명환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강서구청장 귀하

**강서유통단지 고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민간위탁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강서유통단지 고객지원센터 운영 민간 위탁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강서유통단지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상인
조직에서 부담하여 별도의 지원 예산이 없음

4. **작성자** : 미래경제국 지역경제과 (담당:행정7급 이소현 / 2600-6277)